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77
----------	------

제출연월일: 2017. 6. 30.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법제처의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상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사용료 일부를 개정하여, 문화·예술·체육 등 복합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상 반영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지적사항)
제11조 (부대설비 설치등) 2항	②구청장은 시설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 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 없는 부담을 부과
제14조 (압입제한) 제호	1. 전염병이 있는 사람	1. 감염병 이 있는 사람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제22조 (위원의 임기 등) 제2항제2호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질병이나 ,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사망」은 당연사실 사유므로 위촉·해제사유가 아님

나. 기타 사용료 일부 조정 : 【별표 1】 사용료 기준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연습실	어울마루	연습실로 되어 있는 명칭을 현 명칭 어울마루로 조정
<신 설>	연습실 1회 20,000원	연습실 공간에 사용료를 부과하여, 공간 활용을 원하는 주민에게 편의 제공
<신 설>	합창단 1일 30,000원	합창단 구입에 따른 조례 반영
<신 설>	관람권 발행 1회 75,000원	관람권을 외부에 제작하던 사례를 전당자체에서 발행해주는 편의 제공(※관람권 1매 150원 원가 기준)
빔 프로젝트 1회 200,000원	빔 프로젝트 1회 100,000원	1회 대관에 공연회수가 많은 전문 공연팀에게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여 금액 조정
<신 설>	체육시설 30일 이상 대관시 기준 사용료의 70%로 한다.	향후 우수전시프로그램을 장기 대관으로 유치할 시 필요

3. 근거법규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나.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의견없음

라. 입법예고 : 2017. 6. 5. ~ 6. 26.(의견없음)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728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시설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를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의”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사망, 질병”을 “질병이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사 용 료 기 준(제8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공 연	행 사		
공연장 (함월홀)	오전	100,000	200,000		가.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1) 함월홀 기본사용료에는 기본무대 및 객 석, 분장실, 분장실 개별 냉난방, 전기사용료, 안내데스크, 물품보관함, 외벽 현수막설치대, 그 밖의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시설의 사용료 포함. 2) 어울마루, 체육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전시부스, 보호매트 사용자가 설치) 나. 공연장의 토·공휴일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30%를 가산함. 다.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라.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등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 때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마.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이용 때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나목 및 라목은 미적용) 바. 초과에 대한 이용료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때는 다음 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 체육시설 30일 이상 대관시 기준 사용료의 70%로 한다.
	오후	140,000	280,000		
	야간	200,000	400,000		
어울마루	오전	50,000			
	오후	80,000			
	야간	120,000			
체육시설 (별빛마루)	기준	예술공연 및 문화행사	전시 (1일 기준)	체육 및 일반행사 (1시간기 준)	
	오전	100,000	100,000	60,000	
	오후	120,000			
	야간	180,000			
체육시설 (달빛마루)	오전	80,000	80,000	50,000	
	오후	100,000			
	야간	150,000			
연습실	1회	20,000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사 용 료		비 고
		기 준	사용료	
피아노	그랜드형(고급)	1회공연	120,000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때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함.
	그랜드형(일반)	1회공연	60,000	
	업라이트	1회공연	20,000	
악기	드럼세트	1회공연	100,000	
	신디사이저	1회공연	60,000	
앰프	베이스앰프	1회공연	30,000	
	기타앰프	1회공연	20,000	
무대 시설	덧마루	1일	10,000	○ 33㎡(10평)기준 금액 ○ 추가 3.3㎡(1평)당 1,000원 ○ 설치·운영인력 별도 부담
	합창단	1일	30,000	○ 설치인력 별도 부담
	댄싱플로어 매트	1일	30,000	○ 설치인력 및 테이프 별도
	무전기	1일	10,000	○ 5대 기준
	샤막 (흑색, 백색)	1개당/1일	10,000	○ 설치인력 별도 부담
음향 시설	음향반사판	1일	50,000	○ 기본시설은 무대시설을 제외한 Main System과 유선마이크 2개를 포함한 금액임. ○ CD(DV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빔프로젝트	1회	100,000	
	기본시설	1회	100,000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멀티트랙녹음	1회	50,000	
무대 조명	기본시설	1회	100,000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때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포오그머신	1회	15,000	
	팔로우스팟라이트	1대	10,000	
	무빙라이트	1대	10,000	
	LED라이트	1대	10,000	
냉·난 방	공연장	1시간	난방60,000 냉방45,000	
	어울마루		난방20,000 냉방20,000	
	체육시설		난방20,000 냉방20,000	
관람권 발행		1회	75,000	
대·소도구 및 그 밖의 물품		1회	취득가액의 3%	

※ 비 고

- 무대시설의 사용은 기본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 가능하다.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3.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기 준	수강료	비 고
일반강좌	주1~2회 2시간	월 50,000원이하	○재료비는 본인 부담한다.
특별강좌	주1~2회 2시간	회 20,000원이하	○강좌시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1조(부대설비 설치 등)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p> <p>③ ~ ⑤ (생략)</p> <p>제14조(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입장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1. 전염병이 있는 사람</p> <p>2. 3. (생략)</p> <p>제22조(위원의 임기 등)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p> <p>3. 4. (생략)</p>	<p>제11조(부대설비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의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14조(입장의 제한) -----</p> <p>-----</p> <p>-----</p> <p>-----</p> <p>1. 감염병-----</p> <p>2. 3. (현행과 같음)</p> <p>제22조(위원의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질병이나-----</p> <p>-----</p> <p>3. 4.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1] 사용료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p>					<p>[별표 1] 사용료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p>						
구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구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공연	행사					공연	행사		
공 연 장	오전	100,000			1)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가) 합월할 기본사용료에는 기본무대 및 객석, 분장실, 분장실 개별냉난방, 전기사용료, 안내데스크, 물품보관함, 외벽 현수막설치대 기타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시설의 사용료 포함 나) <u>연습실</u> , 체육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 (전사부스, 보헤트 사용자가 설치) 2) 공연장의 토·공휴일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30%를 가산함.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등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 때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한다. 5)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이용 때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제2세목 및 제4세목은 미적용) 6) 초과에 대한 이용료 가산 가)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의 초과 때마다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나) 1시간 이상 초과 때는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신 설>	가.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1) 합월할 기본사용료에는 기본무대 및 객석, 분장실, 분장실 개별냉난방, 전기사용료, 안내데스크, 물품보관함, 외벽 현수막설치대 기타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시설의 사용료 포함 2) <u>어울마루</u> , 체육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 (전사부스, 보헤트 사용자가 설치) 나. 공연장의 토·공휴일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30%를 가산함. 다.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라.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등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 때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한다. 마.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이용 때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나목 및 라목은 미적용) 바. 초과에 대한 이용료 가산 <삭 제> 2) 1시간 이상 초과 때는 다음 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 체육시설 30일 이상 대관시 기준 사용료의 70%로 한다.					
	오후	140,000					오전	100,000			
	야간	200,000						오후	120,000	100,000	60,000
연 습 실	오전	50,000			1)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가) 합월할 기본사용료에는 기본무대 및 객석, 분장실, 분장실 개별냉난방, 전기사용료, 안내데스크, 물품보관함, 외벽 현수막설치대 기타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시설의 사용료 포함 나) <u>연습실</u> , 체육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 (전사부스, 보헤트 사용자가 설치) 2) 공연장의 토·공휴일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30%를 가산함.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등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 때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한다. 5)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이용 때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제2세목 및 제4세목은 미적용) 6) 초과에 대한 이용료 가산 가)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의 초과 때마다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나) 1시간 이상 초과 때는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신 설>	가.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1) 합월할 기본사용료에는 기본무대 및 객석, 분장실, 분장실 개별냉난방, 전기사용료, 안내데스크, 물품보관함, 외벽 현수막설치대 기타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시설의 사용료 포함 2) <u>어울마루</u> , 체육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 (전사부스, 보헤트 사용자가 설치) 나. 공연장의 토·공휴일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30%를 가산함. 다.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라.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등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 때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한다. 마.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이용 때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나목 및 라목은 미적용) 바. 초과에 대한 이용료 가산 <삭 제> 2) 1시간 이상 초과 때는 다음 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 체육시설 30일 이상 대관시 기준 사용료의 70%로 한다.					
	오후	80,000					야간	180,000			
	야간	120,000					체 육 시 설	오전	80,000		
체 육 시 설 (1층)	오전	100,000			1)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가) 합월할 기본사용료에는 기본무대 및 객석, 분장실, 분장실 개별냉난방, 전기사용료, 안내데스크, 물품보관함, 외벽 현수막설치대 기타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시설의 사용료 포함 나) <u>연습실</u> , 체육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 (전사부스, 보헤트 사용자가 설치) 2) 공연장의 토·공휴일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30%를 가산함.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등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 때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한다. 5)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이용 때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제2세목 및 제4세목은 미적용) 6) 초과에 대한 이용료 가산 가)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의 초과 때마다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나) 1시간 이상 초과 때는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신 설>	가.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1) 합월할 기본사용료에는 기본무대 및 객석, 분장실, 분장실 개별냉난방, 전기사용료, 안내데스크, 물품보관함, 외벽 현수막설치대 기타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시설의 사용료 포함 2) <u>어울마루</u> , 체육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 (전사부스, 보헤트 사용자가 설치) 나. 공연장의 토·공휴일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30%를 가산함. 다.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라.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등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 때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한다. 마.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이용 때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나목 및 라목은 미적용) 바. 초과에 대한 이용료 가산 <삭 제> 2) 1시간 이상 초과 때는 다음 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 체육시설 30일 이상 대관시 기준 사용료의 70%로 한다.					
	오후	120,000	100,000	60,000			오전	100,000			
	야간	180,000					오후	100,000	80,000	50,000	
체 육 시 설 (2층)	오전	80,000			1)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가) 합월할 기본사용료에는 기본무대 및 객석, 분장실, 분장실 개별냉난방, 전기사용료, 안내데스크, 물품보관함, 외벽 현수막설치대 기타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시설의 사용료 포함 나) <u>연습실</u> , 체육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 (전사부스, 보헤트 사용자가 설치) 2) 공연장의 토·공휴일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30%를 가산함.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등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 때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한다. 5)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이용 때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제2세목 및 제4세목은 미적용) 6) 초과에 대한 이용료 가산 가)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의 초과 때마다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나) 1시간 이상 초과 때는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신 설>	가.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1) 합월할 기본사용료에는 기본무대 및 객석, 분장실, 분장실 개별냉난방, 전기사용료, 안내데스크, 물품보관함, 외벽 현수막설치대 기타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시설의 사용료 포함 2) <u>어울마루</u> , 체육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 (전사부스, 보헤트 사용자가 설치) 나. 공연장의 토·공휴일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30%를 가산함. 다.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라.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등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 때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한다. 마.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이용 때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나목 및 라목은 미적용) 바. 초과에 대한 이용료 가산 <삭 제> 2) 1시간 이상 초과 때는 다음 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 체육시설 30일 이상 대관시 기준 사용료의 70%로 한다.					
	오후	100,000	80,000	50,000			오전	80,000			
	야간	150,000					오후	100,000	80,000	50,000	
<신 설>					야간	150,000					
					연습실	1회	20,000				

현행				개정안					
2. 부대시설 사용료				2. 부대시설 사용료					
시설명	기준	사용료	비고	시설명	기준	사용료	비고		
피아노	그랜드형(고급)	1회 공연연	120,000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때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함.	피아노	그랜드형(고급)	1회 공연연	120,000	
	그랜드형(일반)	1회 공연연	60,000			안기	그랜드형(일반)	1회 공연연	60,000
	업라이트	1회 공연연	20,000				드럼세트	1회 공연연	100,000
악기	드럼세트	1회 공연연	100,000		신디사이저		1회 공연연	60,000	
	신디사이저	1회 공연연	60,000		앰프	베이스앰프	1회 공연연	30,000	
앰프	베이스앰프	1회 공연연	30,000			기타앰프	1회 공연연	20,000	
	무대시설	기타앰프	1회 공연연		20,000	무대시설	덧마루	1일	10,000
덧마루		1일	10,000		합창단		1일	30,000	
<신 설>					댄싱플로어매트	1일	30,000		
댄싱플로어매트		1일	30,000		무전기	1일	10,000		
무전기		1일	10,000	사막(후색,백색)	1개 당/1	10,000			
사막(후색,백색)		1개 당/1	10,000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1일	50,000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1일	50,000		빔프로젝트	1회	100,000		
	빔프로젝트	1회	200,000		기본시설	1회	100,000		
	기본시설	1회	100,000		유선마이크	1개	3,000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멀티트랙녹음	1회	50,000		
	멀티트랙녹음	1회	50,000	무대조명	기본시설	1회	100,000		
무대조명	기본시설	1회	100,000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포오그머신	1회	15,000		
	포오그머신	1회	15,000		팔로우스플라이트	1대	10,000		
	팔로우스플라이트	1대	10,000		무빙라이트	1대	30,000		
	무빙라이트	1대	30,000		LED라이트	1대	20,000		
	LED라이트	1대	20,000	냉난방	공연장	난방 60,000 45,000			
냉난방	공연장	난방 60,000 45,000	연습장		1시간	연습장		난방 20,000 20,000	
	연습장	난방 20,000 20,000				체육시설		난방 20,000 20,000	
	체육시설	난방 20,000 20,000		<신 설>					
<신 설>			대·습도구물품	1회	취득가액의 3%				
대·습도구물품	1회	취득가액의 3%	관람권 발행	1회	75,000				
관람권 발행	1회	75,000	대·습도구물품	1회	취득가액의 3%				

※ 무대시설의 사용은 기본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 가능하다.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 무대시설의 사용은 기본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 가능하다.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근거법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16.2.3.] [법률 제13962호, 2016.2.3., 일부 개정]

제3조(시책과 권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68호, 2017.4.18., 일부개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안 번호	1377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7. 6. 30.(금)
-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7. 7. 3.(월)
-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17. 7. 14.(금)

2. 제안설명 요지(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중)

가. 제안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상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사용료 일부를 개정하여 문화·예술·체육 등 복합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 반영
 - 법령에 근거없는 비용부담 조문 정비(안 제11조제2항)
 - 전염병 ⇒ 감염병(안 제14조제1항)
 - 위원해제 사유 중 “사망” 삭제(안 제22조제2항)
- 2) 명칭 변경 및 사용료 정비(안 별표 1)
 - 연습실 ⇒ 어울마루, 1층 ⇒ 별빛마루, 2층 ⇒ 달빛마루
 - 연습실 : 1회 20,000원(신설)
 - 무대시설 : 합창단 1일 30,000원(신설)
 - 음향기기 : 빔 프로젝트 1회 200,000원 ⇒ 100,000원
 - 관람권 발행 : 1회 75,000원(신설)
 - 체육시설 30일 이상 대관시 기준 사용료의 70%로 한다.(신설)

다. 근거법규

- 1)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 2)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영환)

-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운영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시설 명칭 및 사용료 일부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